

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-368호

대·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도 「대·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」의 과제 모집(2차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6월 16일  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## 2025년도 대·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과제 모집공고(2차)

### 1. 사업개요

- 목 적 : 해외진출 역량은 갖고 있으나,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주관기업의 현지 네트워크·인프라를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
- 사업기간 : '25년 6월 ~ 12월
  - \* 사업기간 내 과제수행을 완료 및 정산할 수 있는 과제에 한하여 모집
- 주요내용 : 대기업 등 현지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및 현지화 활동 지원

#### < 사업유형 및 세부내용 >

사업유형	세부내용	지원규모	지원비율
소비재	· 뷰티·푸드·의류·생활용품·의약품 등 일상생활에서 직접 소비하는 재화 * 개인이 최종소비자가 되는 완성된 제품	기업당 최대 3천만원 이내	총 과제비 60% 이내 * 상생협력기금 활용시 70% 이내
산업재	· 산업재 또는 서비스 등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재·부품·제품 * 최종 소비재를 완성하기 위한 중간재 등		

\* 지원규모 및 비율은 사업비 예산한도와 지원유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
(유형별 세부내용 참고, p.7~p.14)

## 2. 신청자격

□ 신청자격 : 대기업 및 중견기업, 공공기관 등이 주관기업\*의 역할로 대·중소기업 동반진출 과제를 발굴 및 신청

\*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참여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대기업, 중견기업, 공공기관, 일부 협·단체(동반진출협의회 운영기관 제외) 등

\* 주관기업 제한 요건 외 주관기업 자격 부합 여부는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

### 주관기업 제한 요건

◆ 「대·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」에 따른 참여제한 기업

◆ 신청기업(또는 대표자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- ① 기업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, 화의,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
  - \* 단, 신청·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
- ②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
- ③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
- ④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
- ⑤ 기업 또는 대표자가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경우
- ⑥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⑦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제13조 제4항 등을 준용하여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⑧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

업종 분류	품목코드	지원제외 업종
제조업	33402中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	33409中	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도매 및 소매업	46102中	담배 중개업
	46331 46333	주류, 담배 도매업
	4722中	주류, 담배 소매업
숙박 및 음식점업	5621	주점업
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	5821中	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9124	갬블링 및 베틱업

※ (참여기업) 주관기업 또는 관리기관(상생협력재단)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한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'중소기업\*'으로 이 사업의 수혜대상을 칭함

\* 특례대상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포함

\* 참여제한

- 소비재(K콘텐츠, 유통망), 산업재(판로개척)는 세부 유형별 연간 최대 2회 참여 가능
- 산업재(현지화)의 경우, 1회만 참여 가능(참여동의서 제출 시 기업에 반드시 타 과제 참여여부 확인)  
(다만, 다년간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프로젝트형 동반 해외진출 과제에서 신청 가능)

### 3. 추진절차

#### □ 추진절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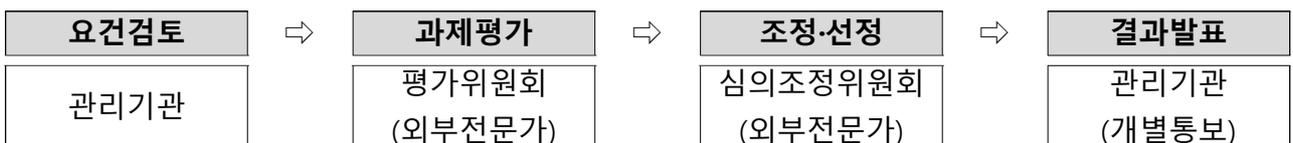
- **(과제 협약)**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된 과제 운영계획서로 협약을 진행하며, 협약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리기관과 사전 논의 必
- **(정부지원금)** 정부지원금 최대 80%까지 先 지급 후, 잔여지원금 20%는 과제 결과보고 및 정산 완료 후 지급
  - \* 과제기간 내에 집행된 금액에 한하여 비용인정(과제기간 외 지출 불인정)

### 4. 평가 및 선정

#### □ 평가·선정방법

- **(평가위원회)**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5인 이내로 구성하여, 주관기업의 과제 운영능력, 달성 목표, 추진계획 등을 대면하여 평가
  - \* 단, 주관기업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표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 대표가 대참하여 발표 가능
  - \*\* 평가항목 : 운영계획 타당성, 주관기업 운영능력, 지원규모 및 효과, 가감점 등
- **(심의·조정위원회)**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과제 대상으로 당해연도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과제 선정 및 예산 조정
  - \* 단, 선정·협약 이후라도 타 정부지원과 중복수혜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제외(국고 환수)

#### □ 평가절차



□ 평가기준

구분		평가내용
평가항목(100)		운영계획 타당성(40), 주관기업 운영능력(30)
		지원규모 및 효과(30) 또는 성과목표(15), 참여기업역량평가(15)
가·감점 항목	가점(+3)	1. 대기업 상생협력기금 또는 현금 출연 여부(+2) 2. 전년도 동반진출 언론홍보* 여부(+1) * 중기부, 재단, 동반진출 사업명 등을 명시하는 경우에 한함 3.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여부(+1)
	감점(-2)	1. 전년도 사업취소 및 중도포기(-1) 2. 전년도 참여기업 민원 접수(-1) * 천재지변, 전쟁, 테러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서 과제 진행이 불가하여 관리기관이 사유를 승인하는 경우 감점 제외

\* 과제유형별 세부 평가기준은 대·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(중기부 고시 제2025-44호) 참고 바랍니다.

## 5. 신청방법 및 문의처

□ 모집공고 일정(안)

구분	신청기간	평가·심의
2차	'25. 6. 16.(월) ~ 7. 18.(금) 18:00까지	~7. 31.(화)

□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

○ 접수방법 : 온라인 제출

- 상생누리플랫폼(www.winwinuri.or.kr) 내 대·중소기업 동반진출 메뉴 접속 및 공지사항에서 확인, 신청

※ 신청은 7.18.(금) 18:00까지이며, 접수마감 이후에는 시스템 상 등록이 어려운 점 참고하여, 일정 준수 필요

○ 제출서류 \* 붙임의 제출서류 양식 참고

구분	제출서류	비고
공통 서류 (필수)	· 과제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[별지 제1-1호]	[붙임]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및 기업(관) 직인 날인 必
	· 청렴·윤리 실천서약서 [별지 제2-1호]	
	· 법인·개인·신용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치 동의서 [별지 제2-3호]	
	· 예산계획 산출근거 자료	비교견적서 등
추가 서류 (선택)	· 주관기업 사업자등록증	국세청 민원증명 서비스
	· 수행기관 참여 동의서 [별지 제2-4호 및 첨부1, 2]	수행기관이 있을 경우
	· 우대조건(가점)별 관련 증빙자료 * 상생협력기금 출연계획, 전년도 언론홍보자료 및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 확인서 등	해당사항에 대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
	· 참여기업 참여 동의서 및 일반현황실적표(개별기업별) [별지 제2-5호] * 관련 증빙자료(MOU자료, 공식 언론보도 등) 제출	산업재 지원과제 유형에 따라 추가제출 必

□ 관련 문의

관리기관	전화번호	이메일
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	· (소비재) 02-368-8473, 754 · (산업재) 02-368-8793, 764	gw@win-win.or.kr

## 6. 유의사항

- 주관기업은 타 기업, 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
- 과제 신청 시 예산계획은 과제비 편성기준(참고 2)과 별도 산출근거(견적서, 내부품의서, 전년도 사업예산 등)를 바탕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
-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하며, 정부지원금은 총사업비의 60% 이내, 민간부담금\*은 40% 이상으로 구성
  - \* 민간부담금은 주관기업(일부 협력·참여기업 부담 가능)이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며 대기업이 대·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시, 70%이내 정부지원금 편성·지원 가능
  - \* 단, 유통망 과제의 경우, 정부지원금 매칭 비율 10% 하향 조정 (정부지원금 50% 이내 구성하며,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60% 이내 구성)
- 주관기업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비 교부 신청 및 집행·정산을 진행하여야 하며, 사업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좌개설이 가능해야 함
- 주관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에 따라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에 기금을 출연(상생협력기금)하여 과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, 사업신청서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기재
- 주관기업은 주관기업의 특수관계자(법인세법 제2조제12호,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)인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없음
- 주관기업·수행기관·참여기업의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사후 환급 가능 금액(예외. 면세사업자) 및 공제받을 금액 또는 관세 등과 같은 수수료는 정부지원금 불인정(단, 은행송금수수료, 환전수수료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예산 편성 및 최종 승인시 인정 가능)

- 주관기업이 과제를 수행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, 사업신청서에 수행기관 정보와 위탁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, 「대·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수행기관\* 참여 동의서」를 제출하여야 함
  - \*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주관기업과 공동으로 과제를 추진하거나 주관기업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기업
- 주관기업 등은 사후 1년간 관리기관의 성과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, 사업 추진 및 성과조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향후 사업 참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
- 과제 선정 시 확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며, 관리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
  1.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기간 내 협약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  2. 허위로 (수정)사업계획서를 작성·제출한 경우
  3. 협약 체결 전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
  4.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
  5.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주관기업과 협약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-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은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조회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- 정부지원금은 평가위원회 및 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 조정될 수 있으며, 다차년도 과제의 경우 1차년도 이후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관리지침을 준용하며, 공고 및 지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기관의 해석에 따름

**· 관련 법률 및 법령**

- \*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·시행령·시행규칙
- \*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·시행령·시행규칙
- \*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·시행령·행정규칙

**· 대·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 2025-44호)**

## 7. 유형별 세부내용

### 1 소비재

#### ① K콘텐츠

☞ 주관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글로벌 행사, 콘텐츠 제작·배포 등 현지진출 계획과 연계한 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

- 주관기업에서 보유한 행사 운영 및 콘텐츠 제작, 아티스트 IP 활용 역량 등과 연계하여, 中企 제품 판촉전 및 수출상담회 등 지원
  - \* 글로벌 한류 문화행사 및 한류 콘텐츠 등 활용 → '문화-산업' 융합
- (행사) 해외 K팝 콘서트, 전시회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판촉전을 진행하고, 현지 온라인플랫폼 연계 기획전, 수출상담회 등 운영
  - \* 한류행사 연계 한류스타 이벤트(예 : 팬미팅, 제품 시연회 등) 및 IP 활용 영상·포스터 등 제작, 공식 SNS 계정(주관기업 등) 홍보
- (콘텐츠) 한류스타, 인플루언서 등 연계 브랜디드콘텐츠 제작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온라인플랫폼 연계 기획전, 팝업 등 지원

#### ② 유통망

☞ 주관기업의 既 진출지역 내 보유한 유·무형의 인프라, 네트워크와 연계하여,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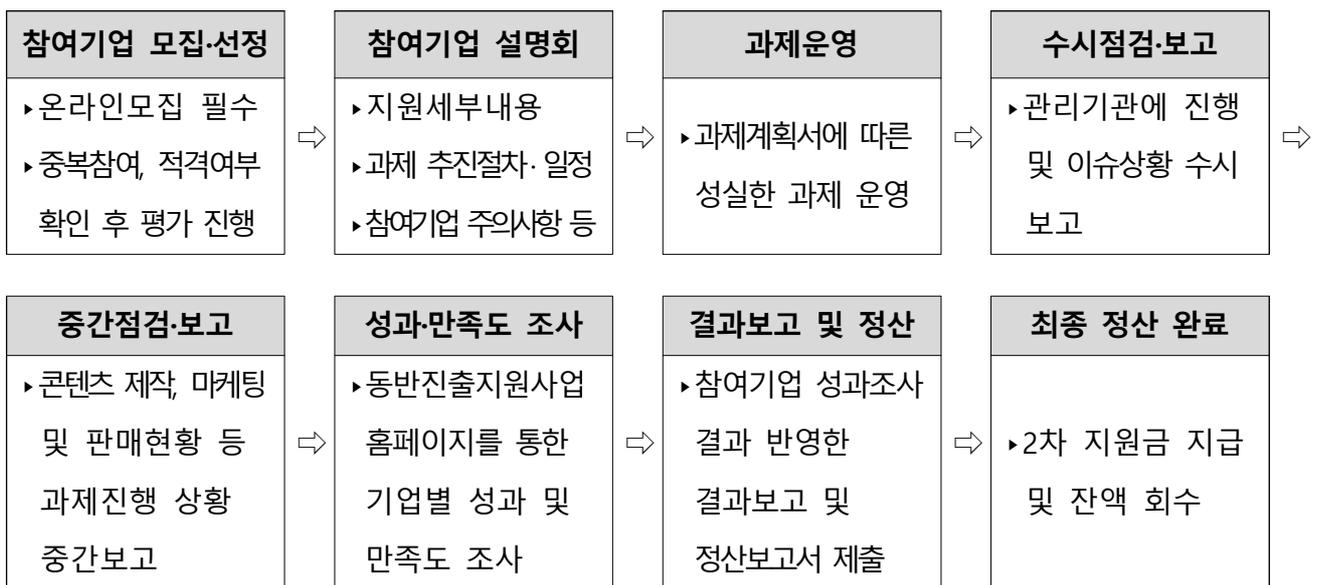
- 주관기업 보유 글로벌 온라인플랫폼, 오프라인 매장 외에도 판매 네트워크를 활용한 타 해외기업 제품 입점, 인증, 마케팅 등 지원
- (B2C) 현지 판매 가능성이 높은 우수 中企 제품 발굴(MD)을 통해 온·오프라인 입점·직접판매, 팝업스토어, 라이브커머스 등 지원

- (B2B) 주관기업, 유관기관이 보유한 해외 바이어 풀을 활용하여, 참여 중소기업 수출상담 및 공동수주회 지원
- (인증·마케팅) 현지 입점 및 판매를 위해 필요한 제품 인증 취득 (예 : 할랄 등)과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 콘텐츠 제작 등 지원

## □ 지원조건

세부내용 및 지원규모	지원항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K-콘텐츠·유통망 : 기업당 최대 3천만원</li> <li>* 총 과제비 60% 이내 / 상생협력기금 활용시 70% 이내</li> <li>* 단, 유통망 과제의 경우, 주관기업이 직매입하는 등의 간접수출 해당시 참여기업당 2천만원 한도, 총 과제비 50% 이내 변경 지원(상생기금 활용시 60% 이내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공간 임차료, 장치비, 제품운송, 수출상담, 한류행사, 홍보마케팅, 콘텐츠 제작, 스타마케팅 제반비용 등</li> </ul>

## □ 추진절차



\* 참여기업 대상 온/오프라인 설명회 진행 및 관리기관에 일정 공유 필수

※ 유형별 지원내용(안)

구 분		주요내용	
K 콘 텐 츠	행 사	B2C 온·오프	· 한류행사(K팝 콘서트 등)를 활용한 오프라인 판촉전 및 팝업스토어, 현지 온라인플랫폼 연계 등 지원
		B2B 수출상담	· 행사 개최국 및 인접국 內 바이어 초청을 통한 중소기업 1:1 수출상담 기회 제공
	콘 텐 츠	콘텐츠 제작	· 한류 콘텐츠 제작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 노출, 홍보 * (PPL) 브랜드콘텐츠(드라마, 예능 등) 內 中企 제품 노출 * (MCN) 인플루언서 활용 중소기업 제품 시연 및 소개
		B2C 온·오프	· 제작 콘텐츠를 활용한 해외 전시회 內 부스관 조성 및 팝업스토어, 현지 온라인플랫폼 연계 등 지원
		B2B 수출상담	· 행사 개최국 및 인접국 內 바이어 초청을 통한 중소기업 1:1 수출상담 기회 제공
	홍 보	마케팅 지원	· 한류스타, 인플루언서 등과 중소기업 제품 매칭을 통한 홍보·마케팅 지원 * (이벤트) 중소기업 제품 시연회 및 경품 증정 이벤트, 팬 미팅(예 : 하이터치), 각종 공연(예 : 댄스) 등 * (IP 활용 제작) 한류스타, 인플루언서 등의 IP를 활용한 영상 및 포스터, 포토카드, 굿즈 등 제작 * (온라인 홍보) 공식 SNS 계정(주관기업, 인플루언서 등) 및 온라인플랫폼 배너 등
유 통 망	온 · 오프 라 인	B2C 온·오프	· 주관기업 보유 글로벌 온라인플랫폼 및 오프라인 유통 매장 입점·판매, 팝업스토어, 라이브커머스 등 지원
		B2B 수출상담	· 행사 개최국 및 인접국 內 바이어 초청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상담회, 공동수주회 개최 * 주관기업 보유 바이어 풀 활용
	기 타	인증·마케팅	· 현지 온·오프라인 입점 및 판매를 위한 중소기업 제품 대상 인증(예 : 할랄 등) 취득 지원 ·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홍보

## 2 산업재

### ① 현지화

☞ 주관기업의 네트워크 또는 현지거점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현지 정착 안정화 지원

- 주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 시범 적용 및 현지업체 요구사항(규격, 스펙 등) 대응을 위한 컨설팅·전문인력 등을 지원 (중장기 프로젝트의 경우, 최대 3년까지 지원)

\* (중장기 프로젝트) 단기 성과 중심에서 벗어나 '기획-진출-판로' 단계별 종합 지원을 위한 중장기형(최대 3년) 과제 신설

구 분	주요내용
현지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b>(제품현지화)</b> 현지 규격·인증 취득 지원, 제품·솔루션 현지화를 위한 기술 컨설팅 등</li> <li>· <b>(해외실증(PoC))</b> 중소기업 제품 현장 시범설치·운영 및 현장 시연을 통한 글로벌 레퍼런스 확보 및 후속사업 연계 지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해외실증에 소요되는 제품현지화비(시제품 제작 및 재료비 구입 비용)은 정부지원금 내(기업당 최대 5,000만원)에서 50%까지만 인정</li> </ul> </li> <li>· <b>(법인설립)</b> 현지 법인설립을 위한 사전조사 및 인·허가 및 법률·회계자문 행정지원, 현지 법인(공장) 운영 및 생산현장 구축을 위한 컨설팅 등</li> </ul> <p>※ 정부지원금으로 기자재 구입 · 자산 취득이 실무상 제한될 수 있음            ※ 주관기업, 참여기업의 MOU, LOI 등 기반 과제의 경우, 관련 추진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및 참여 중소기업 사전 발굴(참여동의서) 포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<b>중장기 프로젝트형 동반 해외진출 지원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보호무역·수출규제,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대기업과 함께 해외 진출하는 협력 중소기업 지원</li> <li>· 대기업의 인프라,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단계별 (기획-진출-판로확대)로 현지화 및 판로개척 지원(3년간, 최대 10억원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참여기업당 한도는 연간 5,000만원 * 3년 = 최대 1억5,000만원 이내이며, 지원기간은 과제내용에 따라 3년 내에서 협약기간을 달리 설정 가능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 <p>※ 프로젝트형 과제는 중장기 계획수립 후 연차별 수행하며, 중간보고서 제출 및 심의·조정위원회에서 계속 수행여부 심의·의결하며 사업기간과 지원규모 등 지원내용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</p>

## ② 판로개척

☞ 주관기업의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제품·기술 판로 개척 및 홍보·마케팅 등을 지원

- 대기업 등의 레퍼런스를 활용한 해외 전시회 공동 참가 및 해외 영업장·현지 에이전트 등을 활용한 수출상담회 등을 지원

구 분	주요내용
<b>판로개척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b>(산업전시회)</b> 주관기업의 브랜드이미지를 활용하여 중소기업과 전시회 공동 참여(부스인부스 형태) 및 바이어 연계 지원</li> <li>· <b>(수출상담회)</b> 주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영업망을 활용하여 온·오프라인 수출상담 지원</li> <li>· <b>(기술로드쇼)</b> 해외정부 등에 중기 기술 소개 및 수출 상담, 네트워킹 지원</li> <li>· <b>(플랫폼활용)</b> 주관기업의 플랫폼 활용 글로벌 서비스 구축 및 입점 지원</li> <li>· <b>(홍보마케팅)</b> 주관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노하우를 활용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홍보·마케팅 지원</li> </ul>

## □ 지원조건

세부내용 및 지원규모	지원항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판로개척 : 참여기업당 최대 3천만원</li> <li>* 총 과제비 60% 이내 / 상생협력기금 활용시 70% 이내</li> <li>■ 현지화 : 참여기업당 최대 5천만원</li> <li>* 총 과제비 60% 이내 / 상생협력기금 활용시 70% 이내</li> <li>* (프로젝트형) 참여기업당 최대 1.5억원(최대 3년)</li> <li>■ 대기업·중소기업 1:1 매칭 가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임차료, 설치비, 운반·보관료, 지급수수료, 제품 현지화비, 홍보·마케팅비 등 과제 수행 제반 비용</li> </ul>

【참고 1】 평가위원회 평가기준

평가위원회 평가표 - 소비재, 산업재(판로개척)									
항목 (배점)	평가지표	배점 (점수차)	평가구분						
운영계획 타당성 (40)	1. 추진계획 내용의 충실성 * 필요성, 동반진출 과제로서의 의미, 세부 추진계획 및 수행일정 등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	10점 (2)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		
			10	8	6	4	2		
	2.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의 객관성	10점 (2)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		
			10	8	6	4	2		
	3. 달성 목표(정량, 정성) 및 예상성과의 실현가능성	10점 (2)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		
			10	8	6	4	2		
	4. 과제비 배정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	10점 (2)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		
			10	8	6	4	2		
주관기업 운영능력 (30)	1. 주관기업 유·무형 자원* 활용도 * 자원 : 온라인 및 오프라인 거점(해외지사, 사무전시·물류 공간, 인력, 네트워크 등 현물 및 현금)	15점 (3)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		
			15	12	9	6	3		
	2. 주관기업의 참여기업에 대한 마케팅, 현지화, 사후관리 등 지원계획 * 전담부서 및 인력보유 현황, 경영진 동반성장 의지 등	15점 (3)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		
			15	12	9	6	3		
지원규모 및 효과 (30)	1. 사업 운영 규모(지원 중소기업 수 등)	10점 (2)	20개 이상	20개 미만	15개 미만	10개 미만	5개 미만		
			10	8	6	4	2		
	2. 사업 예상 효과(정부지원금 투입대비 수출성과) * 예상성과의 산출근거 및 달성 가능성 포함	10점 (2)	10배 이상	10배 미만	5배 미만	2배 미만	동일		
			10	8	6	4	2		
	3. 사후 지원계획 및 성과 관리 계획	10점 (2)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		
			10	8	6	4	2		
가점 (+3)	1. 대기업 상생협력기금 또는 현금 출연 여부(+2) 2. 전년도 동반진출 언론홍보* 여부(+1) * 중기부, 재단, 동반진출 사업명 등을 명시하는 경우에 한함 3.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여부(+1)	최대 3점	* <면책사유> 천재지변, 전쟁, 테러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서 과제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리기관이 사유를 승인하는 경우 감점 제외						
감점 (-2)	1. 전년도 사업취소 및 중도포기(-1) 2. 전년도 참여기업 민원 접수(-1)	최대 -2점							

## 평가위원회 평가표 - 산업재(현지화)

항목 (배점)	평가지표	배점 (점수차)	평가구분					
		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	
운영계획 타당성 (40)	1. 추진계획 내용의 충실성 * 과제 목표, 주관기업의 역할, 세부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	10점 (2)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	
			10	8	6	4	2	
	2. 과제의 타당성 및 과제비 집행계획의 적절성	20점 (4)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	
			20	16	12	8	4	
	3. 사후지원 및 기업 성과관리 계획 충실성	10점 (2)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	
			10	8	6	4	2	
주관기업 운영능력 (30)	1. 주관기업 유·무형 자원* 운영능력의 적절성 * 자원 : 온라인 및 오프라인 거점(해외지사, 사무전사·물류 공간, 인력, 네트워크 등 현물 및 현금)	10점 (2)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	
			10	8	6	4	2	
	2. 참여기업에 대한 마케팅, 현지화, 사후관리 등 주관기업의 지원계획 및 역할 * 전담부서·인력보유 현황, 경영진 동반성장 의지 등 포함	20점 (4)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	
			20	16	12	8	4	
	성과목표 (15)	1. 성과 목표(정량, 정성)의 타당성 및 난이도 * 예상성과의 산출근거 및 달성 가능성 포함	15점 (3)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
				15	12	9	6	3
참여기업 역량평가 (15)	1. 참여기업 과제참여 인력 및 관련 기술 현황 * 사업 책임자(PM) 경력 및 역량, 분야별 참여인력의 전문성, 추진조직 구성 및 운용의 적절성 등 ** 참여기업 보유 기술 및 특허 등 참여기업 기술역량 등	15점 (3)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	
			15	12	9	6	3	
가점 (+3)	1. 대기업 상생협력기금 또는 현금 출연 여부(+2) 2. 전년도 동반진출 언론홍보 여부(+1) * 중기부, 재단, 동반진출 사업명 등을 명시하는 경우에 한함 3.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여부(+1)	최대 3점	* <면책사유> 천재지변, 전쟁, 테러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서 과제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리기관이 사유를 승인하는 경우 감점 제외					
감점 (-2)	1. 전년도 사업취소 및 중도포기(-1) 2. 전년도 참여기업 민원 접수(-1)	최대 -2점						

## 정부 위탁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

### 1. 공통사항

- 주관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한 총 과제비의 60% 이내 정부 위탁지원금 편성·지원
  - \* 단, 상생협력기금 출연시, 70% 이내 정부 위탁지원금 편성·지원
  - \* 소비재(유통망) 과제 - 총 과제비의 50% 이내 정부 위탁지원금 편성·지원(상생기금 활용시 60% 이내)
- 주관기업 등 민간부담금 40% 이상 편성
  - 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기업 부담금(현금/현물) 포함할 수 있음
- 민간부담금은 현금사업비와 현물사업비를 포함하며,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에 따른 ‘상생협력기금’을 현금사업비로 편성 가능

### 2. 사업유형별 지원항목

- 사업유형별 지원기업(제품)당 지원 한도 내 아래 지원항목별 산정내용 및 계상기준 참조
- 주요 지원항목의 사업내용 연계 및 주관기업의 과제 추진내용에 따라 필요한 지원항목을 선택하여 편성하되 참여기업당 지원한도는 소비재(K콘텐츠·유통망)·산업재(판로개척) 3천만원, 산업재(현지화)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
  - \* 단, 소비재(유통망)의 경우, 간접수출에 해당시 기업당 최대 2천만원 한도 지원(총 과제비 최대 50% 이내)
  - \* 산업재 현지화 프로젝트형의 경우, 3년간 최대 1.5억원 지원
- 단, 정책방향 지원 및 전략적 성과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 및 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 한도초과 및 별도항목 지원 가능
- 산업재 과제(현지화-프로젝트)는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

### 3. 지원항목별 산정내용 및 계상기준

지원항목 (지원비목)	산정내용 및 기준
운영비	○ 운영경비 : 통신비, 자료구입비, 소모품비, 인쇄비 등
운반보관료	○ 과제수행을 위한 참여기업 제품 및 각종 물품 해외 운송비(보관, 운송, 통관) 등
지급수수료	○ 국내외 컨퍼런스, 대회, 회의 등의 참가비 ○ 상담주선 용역, 통역원, 안내원, 판촉원, 보조원 등 현지인력 채용 * 판촉사원은 1업체당 1명 지원을 원칙으로 함(1회 기준)
홍보·마케팅비	○ 현수막,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○ 참여기업 및 제품의 광고, 홍보, 마케팅 활동(온라인 및 오프라인 포함)을 위한 비용 ○ 광고대행 업체를 통한 참여기업 및 제품의 광고, 홍보, 마케팅 활동(온라인 및 오프라인 포함)을 위한 비용 ○ 광고대행 업체를 통한 연예인, 인플루언서(왕홍 포함) 등 스타 활용 해외마케팅을 위한 출연료, 콘텐츠 활용권리(초상권, 프로그램IP) 등
전문가활용비	○ 참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역량 강화, 품질 향상을 위한 외부전문가 자문료, 컨설팅 수당 등
대행수수료	○ 사업대행사업자(설치사, 운영용역사, 여행사, 운송사 등) 대행수수료 * 정부지원 확정금액의 10% 이내 편성 가능
임차료	○ 상담회, 전시 혹은 판촉행사,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한 시설·기자재·장비, 파견단 이동 차량 등 임차 비용
제품현지화비	○ 참여기업 제품의 현지 판매를 위한 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시약·재료비 ○ 참여기업 제품의 현지 판매를 위한 제품개발 및 시제품 제작비, 재료비, 성능·사양 개선, 시험분석 비용, 라벨·포장·디자인·설명자료 변경제작비 등 * 정부지원 확정금액의 50% 이내 편성 가능
설치용역비	○ 제품홍보, 판매 등을 위한 장치, 부스설계 및 전시디자인 설치물 제작 및 설치 경비 ○ 시제품 및 현지화 완성 제품의 현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
용역수수료	○ 상담주선 용역, 통역원, 안내원, 판촉원, 보조원 등 용역업체를 통한 현지인력 활용 비용 * 판촉사원은 1업체당 1명 지원을 기준으로 함(1회 기준) ○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보안 및 안전비, 청소비
영상제작비	○ 영상제작 용역 업체를 통한 제품 홍보, 설명, 판매를 위한 동영상 제작, 기존영상 편집비 등 ○ 영상제작 용역 업체를 통한 제품 PPL을 위한 방송 및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비용 (영상 편집비, 작가료, 연출료, 출연료, 카메라 장비, 차량) 등
온/오프라인 입점비	○ (온라인) 입점대행 업체를 통한 참여기업 제품설명 번역료, 제품 설명자료 및 이미지 등 페이지 제작, 제품 등록, 전용관·기획관 구축에 소요되는 경비 ○ (오프라인) 입점대행 업체를 통해 백화점, 마트 내 팝업스토어 등 해외 오프라인 매장 입점 시 발생하는 운영 경비
행사비	○ 행사비 : 간담회, 설명회·세미나 등 부대행사 개최 비용 * 회의비(사업추진비)의 경우 업체당 최대 5만원 한도 내 편성을 원칙으로 함
유의사항	○ 주관기업 등 수행기관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, 홍보 및 마케팅 수단, 담당자 인건비 및 여비 등은 자체부담금으로 계상해야 함 ○ 과제 수행 내용에 따라 상기 명시되지 않은 지원항목(지원비목) 편성 가능 ○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기관의 해석 및 지침에 따름